

국제교육원 장학금 내규

제정일 : 2013. 06. 26.

담당부서 : 국제교육원 행정팀(033-760-5082)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에 의거하여 국제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에서 교비, 개인 및 외부 기관, 정부 지원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본 대학 정규 교육과정 및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본 대학 및 교류대학 학생, 어학연수생 및 위탁 교육생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교육과정) 교육과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1.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
2. 교내·외 및 국내·외의 기관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
3. 본 대학에서 개설되는 정규과목 및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제화 교육에 부합하며 특히, 실질적인 국제교류 및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

제4조(장학금 종류) ① 본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교육원 장학금 내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해당 장학금 예산이 교육원에 배정되어 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장학 담당부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다.

② ‘장학금명’은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배정 시 정해진 장학금명 또는 외부 재원에 의한 장학금일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의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기준) 장학금 지급기준은 본 장학금 내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각 교육과정,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액) 장학금의 지급액은 교육과정 수행 시 학생복지처장을 경유하여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. 단,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

제7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의 지급은 교육원의 요청으로 대학의 장학 담당부서에

서 지급한다.

제8조(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예외) 대학의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18조 제2항 장학금 “중복지급 금지” 예외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3조의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장학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내규의 개정)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규정류 관리 절차를 따른다.

부 칙

(1) 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(2)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